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3조제3항 관련)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안전처(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하부조직·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 1]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 2] 조달청이 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부록 I의 부속서 2 및 부속서 3에 규정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양허내용에 따른다.